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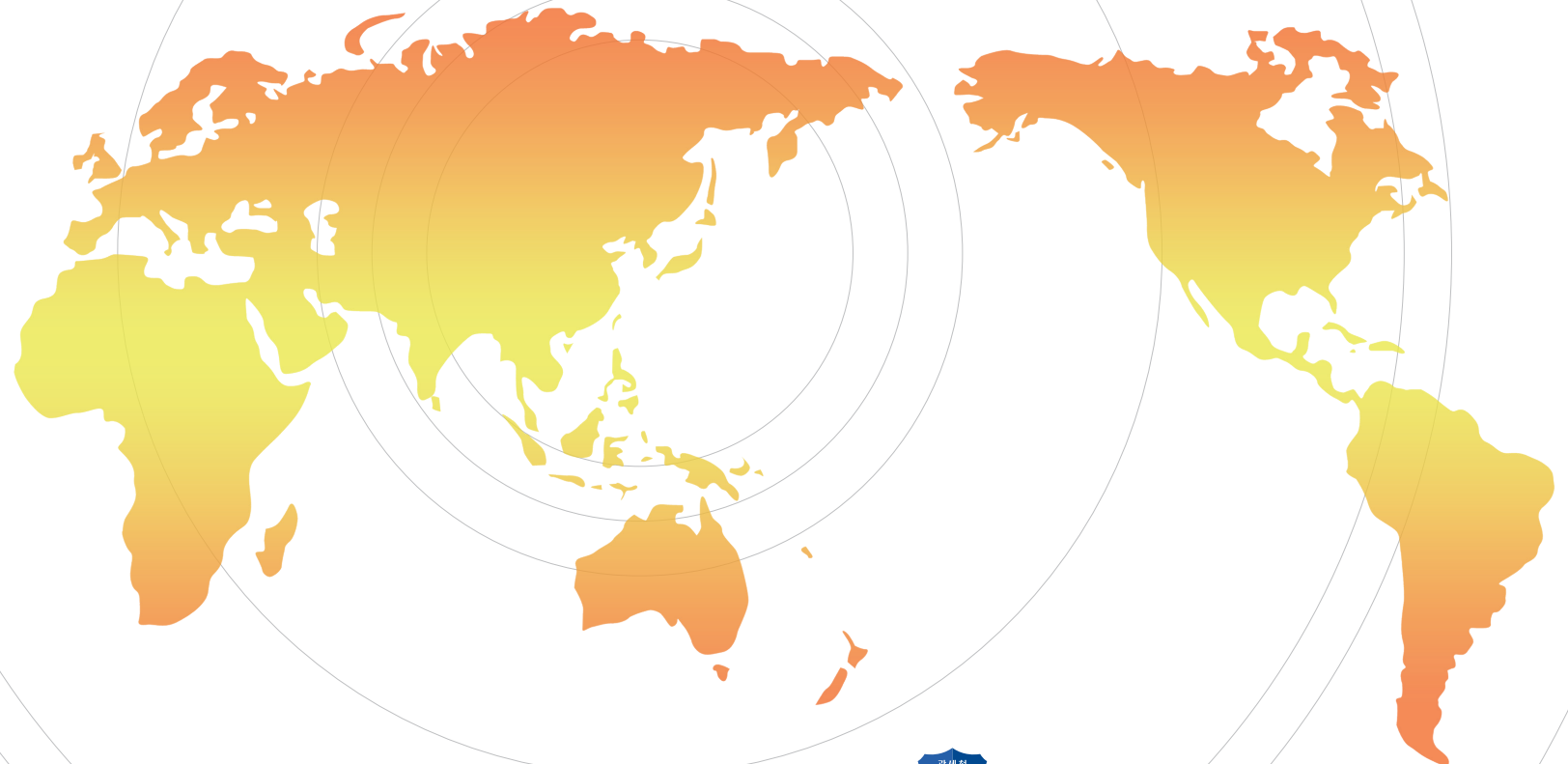
135-7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논현2동 71)
Tel. 02-510-1114 Fax. 02-548-1381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Origin Verification under KORUS FTA



[미국세관 정보제공 요청(CBP Form 28)에 따른 기업의 준비전략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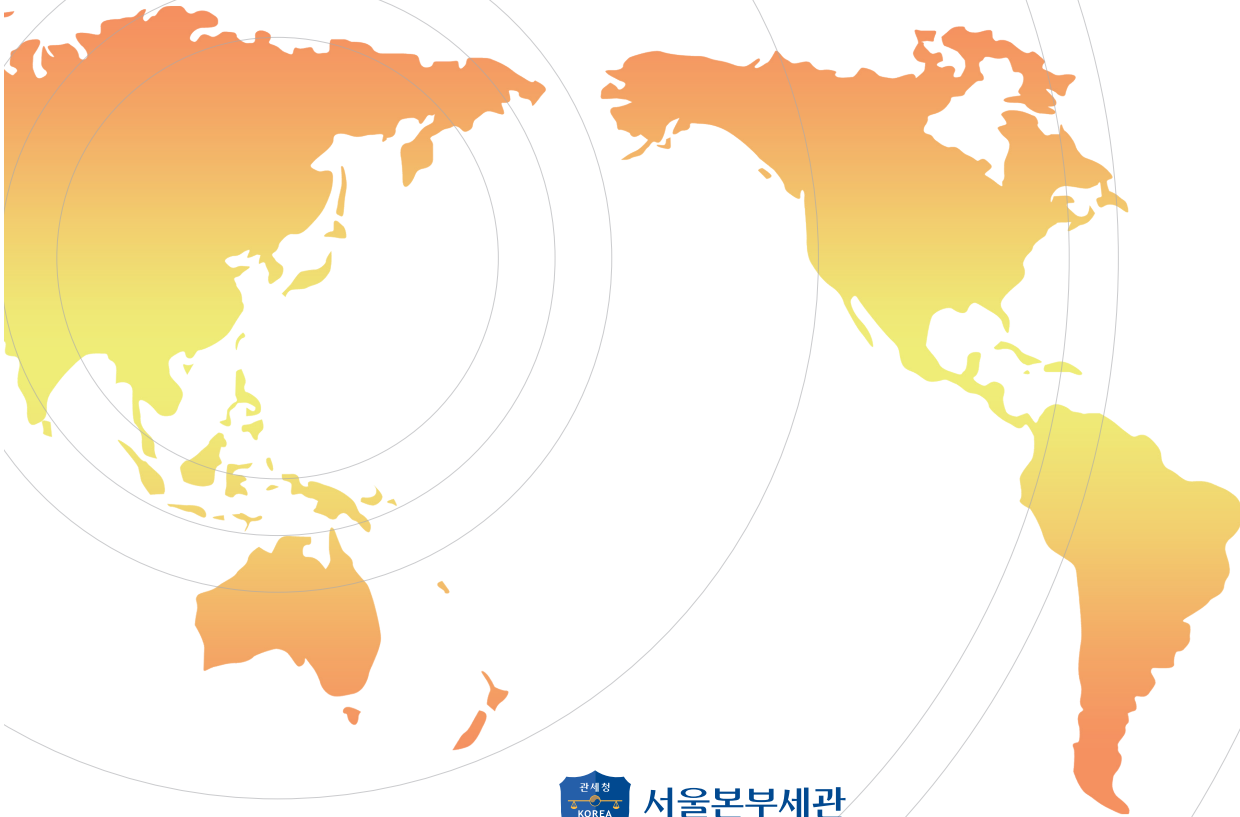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Origin Verification under KORUS FTA



[미국세관 정보제공 요청(CBP Form 28)에 따른 기업의 준비전략 수록]



발·간·사



2014년은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이제는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FTA-Hub 국가로 도약하였으며, 이미 우리 기업들의 FTA 수출 활용률은 67%를 상회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FTA가 대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협정국 간 원산지 검증요청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철저한 준비 없이 FTA를 어설프게 활용해 보려다特惠배제에 따른 미납관세 추징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 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우리 수출 기업이 미국 세관의 생소한 요구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無知’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무적인 응방안(Action-Plan)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검증 정보를 수록하고 실제 자료제공 요청 사례를 예로 들어 미국 측 원산지 검증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서류보관 가이드라인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우리 중소 수출기업 실무자들이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실제 미국측으로부터 검증을 받더라도 보다 담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본부세관장

정재영

0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개요 08

2. CBP의 원산지 검증절차(요약) 10



04

검증결과 및 이행통지

1. 개 요 62

2. 통보내용 63



02

CBP의 정보제공 요청

1. 개 요 14

2. CBP Form 28의 주요내용(구성요소) 15

3. 미국세관의 자료요청 사례(요청내용) 20



05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1. 개 요 68

2.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70

3. 자료보관 가이드라인 73



03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 및 사례

1. 세번변경기준 작성 예시 26

2. 부가가치기준 작성 예시 34

3. 가공공정기준 작성 예시 42

4. 세번변경기준 실제 사례 54



이용안내

이 책자의 내용은 대미 수출기업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관세청(서울세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법률적인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개요
2. CBP의 원산지 검증절차(요약)



1. 한-미 FTA 원산지 검증개요



FTA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령에 따라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배제 또는 수입자 처벌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원산지 검증 방법은 검증수행의 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직접검증 방식^①을 채택하고 있으며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하여는 간접검증 방식^②이 가능한 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의 원산지 검증 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하거나 또는 상대국 관세당국을 통하여 간접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를 관세당국에 제공하게 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나 정보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직접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거나 협정 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①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1항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협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미 FTA 협정 제4.3조 제3항 :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 또는 질의를 할 수 있고 수입자에게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과 달리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 없이 곧 바로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입자에게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검증관련 자료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수입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적용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 관세당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한-미 FTA협정 이행지침」이나 지금까지 미국 세관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사례를 보면 미국 세관은 먼저 자국 수입자에게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검증을 한 후 원산지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 적용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예비결정을 통지한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는 미국세관으로부터 또는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원산지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이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 CBP의 원산지 검증절차(요약)



1. 정보제공 요청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은 CBP Form 28(정보제공 요청서)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CBP가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C/O)와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입증서류는 아래의 서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산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됨)

- 상품의 제조과정을 설명하는 Flow charts, 기술 설명서 및 기타 서류
- 상품이 GN33^③(b)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GN33(o)의 특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
- 원재료의 HS번호, 원산지 및 원가(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표시한 BOM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 재료의 C/O 또는 원산지확인서(입증을 못할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구매확약서(Purchase order) 및 대금결제 입증서류
- 재고관리방법, 간접재료 등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자는 미국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미국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자/생산자는 비밀자료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미국세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GN33(General Note 33)은 미국 CBP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 관세율표(HTSUS)에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수록한 관세율표 주석임(미국 CBP는 FTA 협정이 추가될 때마다 동 주석을 추가하고 있음)

CBP는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정의 양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를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2. 결과 통보

만약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CBP는 유선 또는 Form 29(결정 통지서)로 긍정적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CBP는 부정적 예비결정을 통보하게 되는데, 통보서(Form 29)에는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이유 또는 상품이 비원산지라는 결정과 경정 세율 및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는 예비결정 내용이 포함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확정되게 된다.

02 CBP의 정보제공 요청

- 1. 개 요
- 2. CBP Form 28 내용(구성요소)
- 3. 미국세관의 자료요청 사례(요청내용)



1. 개요



미국세관은 FTA 원산지 검증의 첫 단계로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① 원산지증명서(C/O), ②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③ 원가 자료(Cost Data), ④ 생산 또는 제조관련 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⑤ 주문서 원본(Original Purchase Order), ⑥ 송품장(Invoice), ⑦ 수입대금 결제 증빙자료(Proof of Payment) 및 ⑧ 수입품의 샘플 등을 요구한다.

미국세관은 일반적으로 먼저 자국 내에 있는 수입자에게 상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수입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CBP Form 28을 다시 송부하여 요구한 자료를 자신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미국세관에 직접 제출할 것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한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미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미 FTA 검증상식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에는 원산지 검증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제4.3조에 규정된 섬유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협정에 따른 검증 방법은 ①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② 서면질의 또는, ③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 기업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세관은 ① 1차로 수입자에게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② 2차로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며, 현지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③ 서면 질의서를 송부한 후 ④ 현지검증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

① 1차 C/O 제공 요청 → ② 2차 정보 제공 요청 → ③ 서면질의 → ④ 현지검증

2. CBP Form 28의 주요내용 (구성요소)



미국세관은 FTA원산지 검증시 CBP Form 28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Form 28은 FTA원산지 검증만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일반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과세가격 심사 절차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이다.(그림 1-1 서식 참조)

CBP Form 28의 주요내용은 수입신고일, 제조자/판매자/선적인, 수입신고 번호, 송품장상품명, 송품장 번호, HS부호, 원산지/수출국가, 과세가격과 관련된 질문 및 요청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FTA원산지 검증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14번 란의 'CBP 담당자 메시지'란을 활용하여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CBP Form 28은 FTA 원산지검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충실하게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상 선별 기준은?

미국세관이 원산지검증 대상 선별기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신고 건을 우선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① 미국 관세청에서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품목 - 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 ②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 건
- ③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의 수입신고 건

미국세관의 수입통관 및 심사절차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는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통관단계는 ① 화물반입신고와 ② 납세신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후심사단계는 ③ 사후세액심사와 ④ 정산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① Entry (화물반입신고) → ② Entry Summary (납세신고)* → ③ Post Entry Review (사후심사) → ④ Liquidation (정산과정)

*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은 사후심사의 일종으로 원산지 검증결과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1〉 CBP Form 28 서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1. Date of Reques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그림 1-2〉 CBP Form 28 서식(뒷면)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1.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proper classification and/or appraisalment of your merchandise and/or for insuring import compliance of such merchandise. Your reply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9(a), Tariff Action of 1930, as amended (19 U.S.C. 1509).

2. All information, documents, and samples requested must relate to the shipment of merchandise described on the front of this form.

3. Please answer all indicated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4. All information submitted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5. If a reply cannot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request or if you wish to discuss any of the questions designated for your reply, please contact the CBP officer whose name appears on the front of this form.

6. Return a copy of this form with your reply.

DEFINITIONS OF KEY WORDS IN BLOCK 12

Question A: RELATED - The persons specified below shall be treated as persons who are related:

(A) Members of the same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An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an officer or director of another organization, if each such individual is also an officer or director in the other organization.

(D) Partners.

(E) Employer and employee.

(F)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G)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PRICE PAID OR PAYABLE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total payment (whether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made, or to be made, for imported merchandis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Question B: ASSISTS -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1)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the imported merchandise.

(2) Tools, dies, mo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3) Merchandis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4)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that are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amount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This term relates to those amounts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2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CBP Form 28 (03/11)(Back)

16 |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

17

〈그림 1-3〉 CBP Form 28 서식 국문 번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정보 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
관세법 시행령 §151.11

1. 요청일

2. 수입신고일

3. 제조자 / 판매자 / 선적인	4. 운송사	5. 수입신고 번호
5a. 송품장 상 물품 이름/설명	5b. 송품장 번호	6. HS 코드
7. 원산지 / 수출 국가	8. 관세사 및 참고나 파일 번호	
9. TO:	10. FROM: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또는 정보의 제출: 만약 귀하가 이 질문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CBP 에게 다른 항구를 통해 제출하였다면, 가능한 한 제출한 항구를 기재하고 회신 사본을 이 부서로 제출바랍니다.	11a. 항구	11b. 제출일
전반적 정보 및 설명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12. 표시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13. 표시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A. 귀하는 이 물품의 판매자와 특수 관계(뒷면 참조)에 있습니까? 만약 특수 관계라면,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수입물품의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십시오. ☐ B. 이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경비·비용이 발생한다면 표기하고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 (1) 포장 ☐ (2) 커미션 ☐ (3)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 (4) 생산지원비용 ☐ (5) 권리사용료	☐ A. 이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매주문서 및 판매자 확인서)와 일체의 개정사항 ☐ B. 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출판물이나 정보 제공 ☐ C. 완제품으로 조립할 시 구성요소, 재료나 구성성분의 무게 및 구성요소의 설계원가 ☐ D. 견본품 제출: 물품 번호 및 설명 _____ 컨테이너 _____ 표시 및 번호 _____ 분석에 사용된 견본품 및 특별히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D. 하기 14 번 칸 참조	
14. CBP 담당자 메시지		
15. 회신 메시지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페이지만큼 첨부하십시오.)		
16. 증명서	이 증명서는 적합한 기업 책임자가 작성하고/또는 요청된 정보에 대한 답변을 보증해야 합니다. (알림: 이 문서를 작성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요구사항이 아님)	
	16a. 서명자의 이름 및 직급 (소유주, 수입자 또는 기업 임원)	16b. 서명
		16c. 전화번호
		16d. 날짜
17. CBP 담당자 이름	18. 부서	19. 전화번호

CBP Form 28 (03/11)

〈그림 1-4〉 CBP Form 28 서식(뒷면) 국문번역

- 요청된 정보는 귀사 수입물품의 적절한 품목분류 및/또는 평가 및/또는 물품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귀사의 회신은 개정된(19 U.S.C 1509) 관세법 1930의 §509(a)에 의거하여 필수적입니다.
- 요청된 모든 정보, 문서 및 견본품은 이 문서 앞면에 기술된 물품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 모든 질문에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만약 이 요청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하거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 문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귀하의 답변과 함께 이 문서를 송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칸에 기재되어 있는 핵심 단어들의 정의

질문 A: 특수관계자 - 아래에 기술된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된다.

- (A) 형제자매 (친형제 자매나 이복 형제자매 포함), 배우자, 조상 및 직계 자손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 (B)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및 해당 조직
- (C) 만약 각 개개인이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일 경우, 한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및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 (D) 동업자
- (E) 고용주 및 고용인
- (F) 어떤 조직에서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사외의 결정주식을 소유, 통제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개인이나 해당 조직
- (G)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통제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통제 하에 있는 것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PRICE PAID OR PAYABLE) - 이 용어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지급된 가격이나 지급할 총 가격 (운송, 보험 및 다른 CIF 요금에 대한 그 어떤 값, 요금이나 비용에 대한 직·간접적 및 독점적인 여부와 상관없이)으로 정의한다.

질문 B: 생산지원비용 - 생산지원비용이란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미국으로의 수출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된 요소들을 직·간접적,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수입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 물품
- (2)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4)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단, 미국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함.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이 용어는 당해 수입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 등에서 얻어져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의미한다.

권리사용료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이 용어는 수입물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조건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대행사는 정보 수집을 이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이 정보에 현재 유효한 정부 부여 번호 (OMB control number) 및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서의 정부 부여 번호는 1651-0023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예상 평균 시간은 2시간입니다. 만약 이 평균 시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워싱턴 DC 9번가 799번지에 있는 CBP 규정 및 예규 부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3. 미국세관의 자료요청 사례 (요청내용)



사례 1.

그림 2-1 및 그림 2-2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용 교류발전기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례로 수입자가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① 물품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도, 재질
- ② 원산지증명서(C/O)
- ③ 제조공정도 및 설명자료
- ④ 원산지기준 충족 설명자료
- ⑤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
- ⑥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확인서
- ⑦ 구매 관련 증빙자료
- ⑧ 재고관리 및 간접재료 관련 자료
- ⑨ 기타 증빙 자료

사례 2.

그림 2-3 및 그림 2-4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circular Knit Fabric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례로 수입자가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① 별첨 목록의 모든 서류 사본
- ② 수입물품의 샘플
- ③ 직물의 세부 구성내역
- ④ 구매확약서(Purchase Order)의 사본
- ⑤ 송품장(Invoice)
- ⑥ 수입품의 대금결제 증빙자료

〈그림 2-1〉 CBP Form 28- CBP의 자료요구 사례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04/02/2013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6/2012 09/06/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Hanjin Oslo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ALT'R TG9/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C		5b. Invoice No. VM-0820WS-1/2	6. HTSUS Item No. 8511500000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F.R.T. INTERNATIONAL, INC.	
9. TO:		10. FROM: Millissa Nixon 1000 2nd Ave Ste 2100 Seattle, WA 98104-3629 US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3002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 (1) packing ☒ (2) commissions ☒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4) assists ☒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numb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See continuation sheet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Millissa Nixon		18. Team Designation 790	
		19. Telephone No. 206-553-1428	

CBP Form 28 (08/08)

〈그림 2-2〉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1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Continuation Page		1. Date of Request 04/02/2013	
19 CFR 151.11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6/2012 09/06/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Hanjin Oslo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ALT'R TG9/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C	5b. Invoice No. VM-0820WS-1/2	6. HTSUS Item No. 8511500000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F.R.T. INTERNATIONAL, INC.		
14. CBP Officer Message The items: ALT'R TG9/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G7K listed on invoice VM-0820WS 1 / 2 associated with entry number DQ7-00164626, classified under HTSUS 8511.50.0000 and 8511.40.0000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U.S.C. 3805 not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First, pleas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 illustration of each of the parts. How will they be used? For what purpose? What are they made of? Please provide the certificate of origin with the preference criterion. Nex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A bill or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r each material;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r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Contact: millisssa.a.nixon@cbp.dhs.gov			
17. CBP Officer Millissa Nixon	18. Team Designation 790	19. Telephone No. 206-553-1428	

CBP Form 28 (08/08)

〈그림 2-3〉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11/20/2012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3/2012 09/03/2012		5. Entry No.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BA/115 BRITISH AIRWAYS	6. HTSUS Item No. 6006440085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CIRCULAR KNIT FABRIC	5b. Invoice No. V20120829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ANA LINK, LTD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10. FROM: Michelle Akalski Cst 252 Building 77 JFK International Airport Jamaica, NY 11430 US		
9. TO:	11a. Port 4701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 (1) packing ☐ (2) commissions ☐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4) assists ☐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numb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See continuation sheet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7. CBP Officer Michelle Akalski		16b. Signature	
18. Team Designation 252		16c. Telephone No.	
		16d. Date	
		19. Telephone No. 718-487-2530	

CBP Form 28 (08/08)

〈그림 2-4〉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2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Continuation Page		1. Date of Request 11/20/2012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3/2012 09/03/2012	
19 CFR 151.11		5. Entry No.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BA/115 BRITISH AIRWAYS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CIRCULAR KNIT FABRIC	5b. Invoice No. V20120829	6. HTSUS Item No. 6006440085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ANA LINK, LTD		
14. CBP Officer Message REQUEST FOR INFORMATION: The following good(s), CIRCULAR KNIT FABRIC, was/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 pursuant to GENERAL NOTE 33. The purpose of this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fabric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Please submit a copy of all the documents listed on the attachment as well as a ½ yard sample of THE CIRCULAR KNIT FABRIC (ACET SLINKY VIT-22-275 IVORY/GREEN) imported in this shipment (Invoice # V20120829) and the fabric construction details (see attached form). Also submit a copy of the original purchase order, invoice and proof of payment for this fabric. Note box # 16 below.			
17. CBP Officer Michelle Akalski		18. Team Designation 252	19. Telephone No. 718-487-2530

CBP Form 28 (08/08)

03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 및 사례

1. 세번변경기준 작성 예시
2. 부가가치기준 작성 예시
3. 가공공정기준 작성 예시
4. 세번변경기준 실제 사례



01 세번변경기준 작성 예시

1.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원산지 소명서						
1. 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31)999-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30608-03(2013.06.08)						
3. 품명 / 규격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TSH (ex 8482.10~8482.80, 8482.99)		
	금 액	@9.55				
7. 주요생산과정	베어링 Outer Ring 및 베어링 제조 별첨 Flow charts 및 기술 설명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①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②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③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④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⑤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⑥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⑦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14. 합 계		원산지재료(역내산)			6.55	
		비원산지재료(역외산)			0.75	
		간접재료비			2.25	
		합 계			9.55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 최소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2.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본인은 이 소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임을 인증하며, 본인이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을 책임집니다. 본인은 이 소명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자료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 이 정 한 (서명) 직 위 : 무역부장 상호 및 주소 : (주) ABC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 작 성 일 자 : 201X. XX. XX			
《첨부 문서》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과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귀 세관에서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30608-03)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30608-03(2013.06.08)
- 품목분류 : 8482.10

Ball Bearing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원통 형태의 외륜이 있고, 그 안의 케이지에 철강제 ball(10개)이 결합되어 있음.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함

품목분류 : 8482.10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
- 동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도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 베어링이 해당하는 8482.10 소호에 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 한·미 FTA 협정 제6장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8482.10 ~ 8482.80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가지 임

원산지결정기준 1번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2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 수출물품(Ball Bearing)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번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1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2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3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4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5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6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7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8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원산지재료비				-	6.55	-
비원산지재료비				-	0.75	-
간접재료비				-	2.25	ERP 자료
물품가격(FOB)				-	9.55	수출 Invoice

● 원산지판정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한국산), 최소허용기준 적용

- 원산지결정기준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재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소호변경	충족사유	증빙서류
1	Molded Seal	8482.99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2	Outer Ring	8482.99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3	Inner Ring	8482.99	충족	미국산원재료	원산지증명서
4	Inner Ring	8482.99	충족	미국산원재료	원산지증명서
5	Ball	8482.91	충족	미국산원재료 소호변경	원산지증명서 6단위 소호변경
6	Grease	2710.19	충족	한국산원재료 소호변경	원산지확인서
7	Cage	8482.99	불충족	-	최소허용기준 적용
8	Seal	8482.99	불충족	-	(0.75\$)

- 최소허용기준 : 한·미 FTA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6.6조 최소허용수준 조항에 의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함
 - 최소허용기준 계산

계산방식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조정가치(AV)
계산결과	0.75 / 9.55 = 7.85% ≤ 10%

- Ball Bearing 원산지 판정 결과 : 동 물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재료의 소호변경 및 최소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제품 임

2.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Yangju-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30608-03(08/06/2013)							
3. Name & Model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ex 8482.10~8482.80, 8482.99)		
	Price	@9.55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Bearing(including Outer Ring) production ※ See attached Flow char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					
List of Material (Per Unit)							
8. No	9. Name of Material		10. HS No.	11. Country of Origin	12. Price		13. Supplier (Producer)
					Volume	USD	
①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②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Han Guk, Inc.
③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④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⑤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⑥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⑦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14. Total			Originating Materials			6.55	
			Non-Originating Materials			0.75	
			Indirect Materials			2.25	
			Total			9.55	

Origin Determination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 No ☒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 No ☐
17. Value-added Criterion			
Yes ☐ No ☐ (Ratio : %)			
18. Combined Criterion	Yes ☐ No ☒	19. De Minimis	Yes ☒ No ☐
20. Accumulation	Yes ☒ No ☐	21. Outward Processing	Yes ☐ No ☒
22. Direct Consignment	Yes ☒ No ☐	23. Other Requirements	Yes ☐ No ☒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Name : Lee, Jung Han (Signature) Title : Director of Trade Department Company & Address : ABC, Inc.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Date : DD/MM/YYYY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2. List of Material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20808-01),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Yangju-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 Dated August 8, 2012)
- Tariff Classification(HS) : 8482.10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Ball Bearing

Description of Good(s)

- It has a cylindrical rim in which 10 pieces of balls of iron or steel are combined in a cage. A shaft is inserted to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of such cage, for up-and-down motion.

HS Code: 8482.10

-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482 includes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is heading provides, "This heading covers all ball, roller or needle roller type bearings."
-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482.10, because they are ball bearings that use a ball of iron or steel as a conductor.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riterion 1: CTSH (except for 8482.10 ~ 8482.80, 8482.99)
- Criterion 2: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According to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Chapter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Korea-US FTA, two criteria of Origin determination are applicable for the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as follows.

Criterion 1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of that group, except from subheading 8482.99; or
Criterion 2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subheading 8482.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a) 4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5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 Applied Criterion to the exported goods(Ball Bearing) : Criterion 1
-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Q'ty	Price (USD)	Supplier (Producer)
1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2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3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4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5	Ball	8482.91	U.S.	10ea	1.00	
6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7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8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Originating Material(OM) Cost					6.55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0.75	
Indirect Material Cost + Profit					2.25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9.55	as of Invoice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De Minimis standard applied

- Criterion for Origin Determination : CTSH (except for 8482.10~8482.80, 8482.99)
- Summary of Origin Determination

S/N	Material Name	HS No.	Change in Subheading	Originating Material	SupportingDocument
1	Molded Seal	8482.99	Satisfied	Korea	Origin Confirmation
2	Outer Ring	8482.99	Satisfied		
3	Inner Ring	8482.99	Satisfied	US	C/O
4	Inner Ring	8482.99	Satisfied		
5	Ball	8482.91	Satisfied	US (Subheading Change)	C/O SH Change
6	Grease	2710.19	Satisfied	Korea (Subheading Change)	Origin Confirmation
7	Cage	8482.99	Dissatisfied	—	De minimis applied (0.75\$)
8	Seal	8482.99	Dissatisfied	—	

- De Minimis standard : As provided in Article 6.6 (De Minimis), Chapter 6 of Korea-US FTA,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AV) of the good.

Calculation	Value of all NM(without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AV
Result	0.75 / 9.55 = 7.85% ≤ 10%

- Result of Determination : Originating Good(Korea) satisfying requirement of subheading change of materials and de minimis standard in accordance with Korea-US FTA.

02 부가가치기준 작성 예시

1.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원산지 소명서						
1. 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31)999-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20808-01(2012.08.08)						
3. 품명 / 규격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TSH from 8482.99+RVC (집적법 40% or 공제법 50%)		
	금 액	@9.55				
7. 주요생산과정	베어링 Outer Ring 및 베어링 제조 별첨 Flow charts 및 기술 설명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①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②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③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④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⑤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⑥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⑦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미국산)			6.55	
		비원산지재료(수입산)			0.75	
		간접재료비			2.25	
		합 계			9.55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BU 68.5%, BD 92.1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 최소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2.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 기 타	예 ☐ 아니오 ☒
24. 원산지 결정 총족 (○) 불충족 ()			
본인은 이 소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임을 인증하며, 본인이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을 책임집니다. 본인은 이 소명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자료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 이 정 한 (서명) 직 위 : 무역부장 상호 및 주소 : (주) ABC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 작 성 일 자 : 201X. XX. XX			
〈첨부 문서〉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과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20808-01)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2012.08.08)
- 품목분류 : 8482.10

Ball Bearing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원통 형태의 외륜이 있고, 그 안의 케이지에 철강제 ball(10개)이 결합되어 있음.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함

품목분류 : 8482.10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
- 동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도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 베어링이 해당하는 8482.10 소호에 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 한·미 FTA 협정 제6장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8482.10 ~ 8482.80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가지 임.

원산지결정기준 1번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2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 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 수출물품(Ball Bearing)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2번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증빙서류
1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2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3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4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5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6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7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수입신고서
8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재료비				-	6.55	-	-
비원산지재료비				-	0.75	-	-
간접재료비				-	2.25	-	ERP 자료
물품가격(FOB)				-	9.55	-	수출 Invoice

- 원산지판정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한국산)
-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2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원산지결정기준 2-1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 원산지결정기준 2-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공제법 50
- 원산지결정기준 2-1 : RVC 68.5%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산지결정기준 2-1 : RVC 92.1%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Ball Bearing 원산지 판정 결과 : 동 물품은 제8482.99호의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으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집적법 RVC 68.5%, 공제법 RVC 92.1%로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제품임

원산지결정기준	역내부가가치비율	한·미 FTA 원산지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RVC 68.5%	원산지제품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공제법 50	RVC 92.1%	원산지제품

2.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Yangju-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20808-01(08/08/2012)						
3. Name & Model		Ball Bearing / ABC-6002-1Z		4. HS No.		8482.1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from 8482.99 + RVC(BU40% or BD50%)	
	Price	@9.55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Bearing(including Outer Ring) production ※ See attached Flow char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				
List of Materials(Per Unit)						
8. S/N	9.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USD	
①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②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Han Guk, Inc.
③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④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⑤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⑥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⑦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6.55	
		Non-Originating Materials			0.75	
		Indirect Materials			2.25	
		Total			9.55	

Origin Determination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 No ☒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 No ☐
17. Value-added Criterion		Yes ☒ No ☐ (Ratio : BU 68.5%, BD 92.1%)	
18. Combined Criterion		Yes ☒ No ☐	19. De Minimis
			Yes ☐ No ☒
20. Accumulation		Yes ☒ No ☐	21. Outward Processing
			Yes ☐ No ☒
22. Direct Consignment		Yes ☒ No ☐	23. Other Requirements
			Yes ☐ No ☒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Name : Lee, Jung Han (Signature) Title : Director of Trade Department Company & Address : ABC, Inc.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Date : DD/MM/YYYY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2. List of Material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20808-01),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Yangju-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 Dated August 8, 2012)
- Tariff Classification(HS) : 8482.10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Ball Bearing

Description of Good(s)

- It has a cylindrical rim in which 10 pieces of balls of iron or steel are combined in a cage. A shaft is inserted to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of such cage, for up-and-down motion.

HS Code: 8482.10

-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482 includes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is heading provides, "This heading covers all ball, roller or needle roller type bearings."
-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482.10, because they are ball bearings that use a ball of iron or steel as a conductor.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riterion 1 : CTSH (except for 8482.10 ~ 8482.80, 8482.99)
- Criterion 2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According to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Chapter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Korea-US FTA, two criteria of Origin determination are applicable for the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as follows.

Criterion 1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of that group, except from subheading 8482.99; or
Criterion 2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subheading 8482.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a) 4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5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 Criterion applied to the exported goods(Ball Bearing) : Criterion 2
-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Q'ty	Price (USD)	Supplier (Producer)	Supporting Document
1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Origin Confirmation
2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3	Grease	2710.19	Korea	0.1g	0.05		
4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Import Declaration, Certificate of Origin
5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6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7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Import Declaration
8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Originating Material(OM) Cost				-	6.55	-	-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	0.75	-	-
Indirect Material Cost				-	2.25	-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	9.55	-	as of Invoice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 Applied Criterion to the exported goods : Criterion 2
-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 Criterion 2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Criterion 2-1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method 40%
 - Criterion 2-2 : Change from 8482.99 + Build-Down method 50%
 - Criterion 2-1 : Satisfies requirement under Korea-US FTA, with RVC 68.5%
 - Criterion 2-2 : Satisfies requirement under Korea-US FTA, with RVC 92.1%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Regional Value Content(RVC) is 68.5%(BU) or 92.1%(BD), as produced from materials of the subheading 8482.99

Origin Determination	RVA (%)	Originating
Change from subheading 8482.99 + BU 40	68.5	Yes(Korea)
Change from subheading 8482.99 + BD 50	92.1	Yes(Korea)

03 가공공정기준 작성 예시

1.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소 명 서						
1. 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31)333-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수원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30105-05(2013.01.05)						
3. 품명 / 규격	Men's Padding Jumper / 5Z220		4. HS No.	6201.93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C(ex_)		
	금 액	-		+ cut & sewn or assembled + 제62류 규칙 1		
7. 주요생산공정	국내에서 제직을 통해 생산된 원단을 구매하여 재단, 봉제, 다림질, 라벨링 등을 통하여 완제품 생산 별첨 Flow charts 및 원산지 확인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W)	
①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한국	1yard (200g)	38,000	(주)섬유물산
②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한국	300g	11,000	(주)충진재
③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한국	0.4yard (50g)	9,800	(주)섬유물산
④	단추	9606.21	미상	4ea	1,200	(주)단추
⑤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한국	30m(3g)	500	(주)섬유물산
⑥	지제 라벨	4821.10	미상	3ea	500	(주)라벨
⑦	직물제 라벨	5807.10	미상	4ea(6g)	1,000	(주)라벨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59,3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2,700	
		간접재료비			24,000	
		합 계			86,000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 최소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 역외가공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오 ☒
22. 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본인은 이 소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임을 인증하며, 본인이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을 책임집니다. 본인은 이 소명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자료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 성 자 : 이 정 한 (서명) 직 위 : 무역부장 상호 및 주소 : (주) ABC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 작 성 일 자 : 201X. XX. XX			
〈첨부 문서〉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공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3.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30105-05)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Men's Padding Jumper, Invoice No. ABC20130105-05(2013.01.05)
- 품목분류 : 6201.93

Men's Padding Jumper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남성용 패딩 자켓으로서 전면의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그도록 되었고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밑단에 조임끈, 소매 끝 부위에 리브드한 밴드처리 등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에 패딩이 충전된 방한용의 것.

품목분류 : 6201.93

-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룩·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6101호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제품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용의 남성용 패딩 자켓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1.93 소호에 분류함.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 CC (ex)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
-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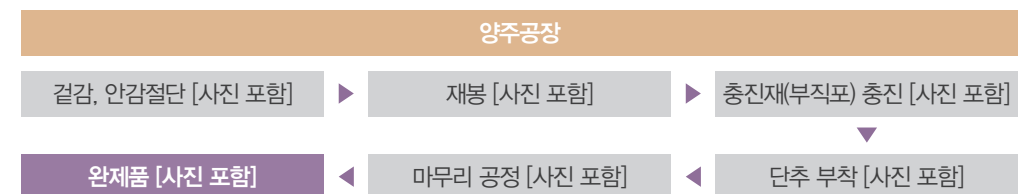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종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1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한국	1yard(200g)	38,000	(주)섬유물산
2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한국	300g	11,000	(주)충진재
3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한국	0.4yard(50g)	9,800	(주)섬유물산
4	단추	9606.21	미상	4ea	1,200	(주)단추
5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한국	30m(3g)	500	(주)섬유물산
6	지제 라벨	4821.10	미상	3ea	500	(주)라벨
7	직물제 라벨	5807.10	미상	4ea(6g)	1,000	(주)라벨
원산지재료비				-	59,300	-
비원산지재료비				-	2,700	-
간접재료비				-	24,000	ERP 자료
물품가격(FOB)				-	86,000	수출 Invoice

원산지판정

- 수출물품 HS CODE :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직물제 남성 패딩 점퍼)
- 원재료 세번변경 판정 : 충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결정기준	충족사유	증빙서류
1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충족	류 변경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23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충족	류 변경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3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4	단추	9606.21	충족	류 변경	-
5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6	지제 라벨	4821.10	충족	류 변경	-
7	직물제 라벨	5807.10	충족	류 변경	-

-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 판정 : 충족
- 제조공정도



- 류 규칙 1 충족 판정 : 충족
 - 5407.42 소호의 직물을 보이는 안감으로 사용한 경우 그 원단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것이어야 함.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 (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품명 : 100% Nylon fabrics(안감)
- 품목번호 : 5407.42
- 생산자 : (주)섬유물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00로 00-0
- 원산지결정기준 : CC (ex)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
- 원재료 명세서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중량)	가격(w)	공급자(생산자)
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yarn	5402.10	한국	3,000m(100g)	2,000	(주)섬유물산

– 제조공정도



- 원단 제조 증빙서류
 - ① 거래 계약서
 - ② 구매 영수증(부가세 영수증 등)
 - ③ 국내운송서류
 - ④ 결재 내역
 - ⑤ 반입내역(반입지시서 등)
 - ⑥ 원산지확인서(원사)

- Men’s Padding Jumper 원산지 판정 : 동 물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재료의 류 변경, 제62류 규칙 1 및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한 제품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 제품 임

2.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0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Suwon-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30105-05(05/01/2013)						
3. Name & Model		Men's Padding Jumper / 5Z220		4. HS No.		6201.93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C + cut & sewn or assembled + Chap. Rule 1 for Chapter 62	
	Price	-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Producing the goods by Purchasing domestically produced fabrics, and tailoring, sewing, ironing, and labeling such fabrics ※ See the attached Flow Charts and Origin Confirmation				
List of Materials(Per Unit)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KRW(₩)	
①	100% polyamide fabrics	5903.20	Korea	1 yard (200g)	38,000	SYC, Inc.
②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Korea	300g	11,000	FM, Inc.
③	100% Nylon fabrics	5407.42	Korea	0.4 yard (50g)	9,800	SYC, Inc.
④	Button	9606.21	Unknown	4ea	1,200	BT, Inc
⑤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Korea	30m (3g)	500	SYC, Inc.
⑥	Paper Label	4821.10	Unknown	3ea	500	LT, Inc.
⑦	Textile Label	5807.10	Unknown	4ea (6g)	1,000	LT, Inc.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59,300	
		Non-Originating Materials			2,700	
		Indirect Materials			24,000	
		Total			86,000	

Origin Determination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 No ☒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 No ☐
17. Value-added Criterion		Yes ☐ No ☐ (Ratio : %)	
18. Combined Criterion		Yes ☐ No ☒	19. De Minimis
			Yes ☐ No ☒
20. Accumulation		Yes ☐ No ☒	21. Outward Processing
			Yes ☐ No ☒
22. Direct Consignment		Yes ☒ No ☐	23. Other Requirements
			Yes ☒ No ☐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Name : Lee, Jung Han (Signature) Title : Director of Trade Department Company & Address : ABC Co./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Date : DD/MM/YYYY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2. List of Material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30105-05),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Suwon-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Men's Padding Jumper(Invoice No. ABC2013105-05; Dated January 5, 2013)
- Tariff Classification(HS) : 6201.93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Men's Padding Jumper

Description of Good(s)

- Jacket of synthetic fibers, designed for left over right closure at the front, and full open and closing with a slide fastener(zipper); Consisting of a detachable hood, ribbed waistband, and tightening string at the bottom of jacket; padded against the cold.

HS Code: 6201.93

- lthe heading 6201 includes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and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heading 6101 provides "they are generally worn over all other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the weather."
- In accordance with Rule 1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good is to be classified in subheading 6201.93.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C + Production Process (Cut & Sewn or Assembled)
 - ① CC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5801 through 5802, or 6001 through 6006,
 - ②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Chapter Rule 1 for Chapter 62.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Volume(Weight)	Price(KRW)	Supplier
1	100% polyamide fabrics(Outshell)	5903.20	Korea	1yard(200g)	38,000	SYC, Inc.
2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Korea	300g	11,000	FM, Inc.
3	100% Nylon fabrics(Lining)	5407.42	Korea	0.4yard(50g)	9,800	SYC, Inc.
4	Button	9606.21	Unidentified	4ea	1,200	BT, Inc.
5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Korea	30m(3g)	500	SYC, Inc.
6	Paper Label	4821.10	Unidentified	3ea	500	LT, Inc.
7	Textile Label	5807.10	Unidentified	4ea(6g)	1,000	LT, Inc
Originating Material(OM) Cost				-	59,300	-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	2,700	-
Indirect Material Cost				-	24,000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	86,000	as of In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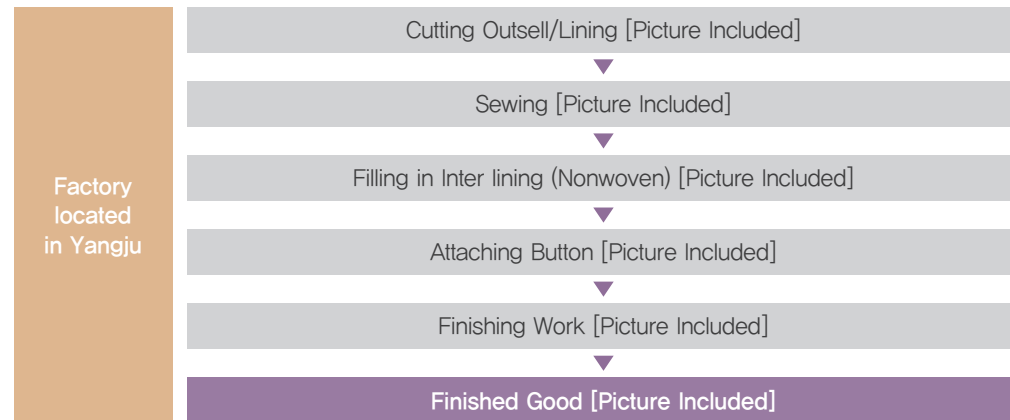
Decision

- HS Code : 6201.93 (Men's Padding Jumper of synthetic fibers)
- CC(Change Chapter) Requirment : Satisfied

S/N	Material Name	HS No.	Requirment	Basis	Supporting Document
1	100% polyamide fabrics (outshell)	5903.20	Satisfied	CC OM(Korea)	Origin Confirmation
23	Inter lining (Nonwovens)	5603.11	Satisfied	CC OM(Korea)	
3	100% Nylon fabrics(lining)	5407.42	Satisfied	CC OM(Korea)	
4	Button	9606.21	Satisfied	CC	-
5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Satisfied	OM(Korea)	Origin Conf.
6	Paper Label	4821.10	Satisfied	CC	-
7	Textile Label	5807.10	Satisfied	CC	-

- The good id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Satisfied

– Production Process Drawing



• Requirement of Chapter Rule 1 : Satisfied

- When a fabric classified in subheading 5407.42 is used to lining, the fabric shall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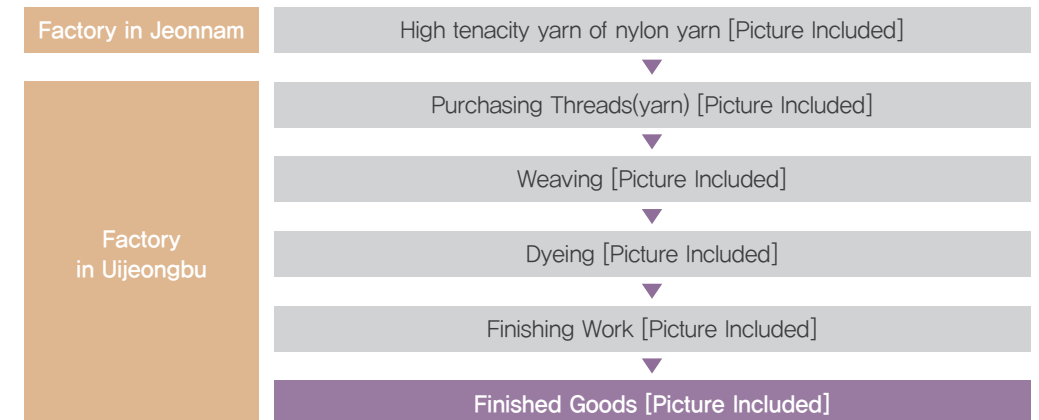
When used in reference to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 Material : 100% Nylon fabrics(Lining)
- HS Code : 5407.42
- Producer : SYC, Inc.
- Address : XXX-X XXXro, Uijeongbu-si, Gyeonggi-do
- Criterion for Origin Determination : CC –Change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or 5509 through 5510)
- List of Material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Volume(Weight)	Price(KRW)	Supplier
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yarn	5402.10	Korea	3,000m(100g)	2,000	SYC, Inc.

– Production Process Drawing



• Evidential Documents of producing fabric

- ① Trade agreement
- ② Purchase receipt (including Value Added Tax)
- ③ Local conveyance document
- ④ Payment statement
- ⑤ Detail of carrying-in(Carrying-in Instruction, etc.)
- ⑥ Origin Confirmation

- **Origin Determination of Men's Padding Jumper** : Originating Good(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US FTA,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Chapter Rule 1 for Chapter 62.

04 세번변경기준 실제 사례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 Export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HWANG SUNG-DONG, KYONGJU CITY, KYONGBUK, KOREA			
2. Produc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HWANG SUNG-DONG, KYONGJU CITY, KYONGBUK,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3. Name & Model		ALT. BOBCAT V2607. 13.5V 90A TG9A0002613848		4. HS No.		8511.5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Price	/ ea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Refer to Attached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List of Materials(Parts)						
8. S/N	9.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Cost	
	REFER TO ATTACHED CONTINUATION SHEET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Non-Originating Materials				
		Total			blind	

REFER TO ATTACHED CONTINUATION SHEET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 No ☒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 No ☐
17. Value-added Criterion		Yes ☐ No ☒ (Ratio : %)	
18. Combined Criterion		Yes ☐ No ☒	19. De Minimis
			Yes ☐ No ☒
20. Accumulation		Yes ☐ No ☒	21. Outward Processing
			Yes ☐ No ☒
22. Direct Consignment		Yes ☒ No ☐	23. Other Requirements
			Yes ☐ No ☒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Name :		(Signature)	
Title :		FTA manager (Purchaing Planning Team)	
Company & Address :		HWANG SUNG-DONG, KYONGJU CITY, KYONGBUK	
Date :		2013.04.26	

List of Materials(Parts) – A0002613848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Origin	12,Price			13,Supplier	
					Volume	Cost			
1	K504101	BALL BEARING–F,H	848210	KR	1	PC	blind	한국○○○케이(주)	
2	K504432	BALL BEARING–R,T	848210	unknown	1	PC	blind	한국○○○케이(주)	
3	TA258N01001	Bar Steel Cut,T	722860	unknown	1	PC	blind	○○기전(주)	
4	C0302545308	BEAR’G COV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5	F1252605352	BOBBIN,T	3926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6	K101327	C/STEEL BAR,C	721499	unknown	127.4	MM	blind	○○산업(주)포항	
7	D6292549591	CIRCUIT BOARD,D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8	K306422	CLEANING FLUID,W	382490	unknown	0,582	AL	blind	○○상사	
9	K100134	COLD ROLL STEEL COIL,S	720917	unknown	0,961	KG	blind	○○철강(주)	
10	K309829	CONDUCTING PAINT,F	320990	unknown	0	KG	blind	○○○○ MADER	
11	B8002606770	COV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12	K407227	DIODE–,A	854110	unknown	3	PC	blind	○○○○○○○ TECHNOLOGY CORPORATION	
13	K407226	DIODE+,A	854110	unknown	3	PC	blind	○○○○○○○ TECHNOLOGY CORPORATION	
14	K200112	ENAMEL COPPER WIRE,T	854411	KR	0,57	KG	blind	○○○전선(주)	
15	G4022605342	F/BACKET M/C,B	851190	unknown	1	PC	blind	○○산업(주)	
16	F3702655472	FAN–F,T	841459	unknown	1	PC	blind	○○(주)	
17	F3802655473	FAN–R,T	841459	unknown	1	PC	blind	○○(주)	
18	E2212601715	FILM POLYESTER,D	392190	unknown	1,33	M	blind	○○○(주)	
19	B1402655331	FLANGE NUT, M	731816	KR	2	PC	blind	○○정공(주) 울산공장	
20	K306009	FLUX,N	851190	unknown	0,02	G	blind	○○상사(주)	
21	D7182655069	HEAT SINK M/C,S	851190	unknown	1	PC	blind	○○엠티(주)	
22	K200960	INGOT SOLDER, S	720719	unknown	0,5	G	blind	○○상사(주)	
23	E3222608761	INSULATION TUBE, D	854720	unknown	3	PC	blind	○○전기(주)	
24	K301595	LIQUID ARGON,A	280421	unknown	52	G	blind	○○코리아(주)	
25	K301733	LIQUID EPOXY,A	320890	unknown	0,002	KG	blind	○○화학	
26	K301773	LIQUID LUBRICANT,K	340399	unknown	16	G	blind	○○○코리아(주)	
27	K302245	LIQUID LUBRICANT WHITE, C	271020	unknown	2,48	G	blind	○○○○ 챔텍(주)	
28	K300872	LIQUID OIL, S	271020	unknown	1	AL	blind	○○상사(주)	
29	K300642	LIQUID S/HEADING OIL,M	340399	unknown	9,6	AL	blind	○○하우튼(주) 온산공장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Origin	12,Price			13,Supplier	
					Volume	Cost			
30	K300913	LIQUID THINNER VARNISH, S	320890	unknown	0,43	G	blind	○○화학	
31	K300912	LIQUID VARNISH BASE, S	320810	unknown	43	G	blind	○○화학	
32	C0062546997	LOCATION PIN,D	392690	unknown	1	PC	blind	○○공업사	
33	K407139	Module,T	854231	unknown	1	PC	blind	○○○○ ANGERS	
34	D5402547179	MOLD,M	392690	unknown	2	PC	blind	○○플라트(주)	
35	B8702618983	NAME PLATE,B	391990	unknown	1,05	PC	blind	○○상사(주)	
36	B0702655152	NUT HEX,T	731816	unknown	1	PC	blind	○○정공(주)울산공장	
37	F3222614441	PAINT,N	321000	unknown	0,2	G	blind	○○상사(주)	
38	K306128	PAINT,T	321000	unknown	0,001	KG	blind	○○○○○ MADER	
39	K306128	PAINT,T	321000	unknown	0,001	KG	blind	○○○○○ MADER	
40	F3172605691	POLE,T	851190	unknown	2	PC	blind	○○정밀(주)	
41	L0002655050	PULLEY,S	848350	unknown	1	PC	blind	○○산기(주)대구지점	
42	K300871	PUNCHING OIL, C	271020	unknown	1,992	AL	blind	○○상사(주)	
43	C0102605340	R/BKT M/C,B	851190	unknown	1	PC	blind	○○크랑크	
44	N0002605600	REGULATOR ASS`Y,B	851190	unknown	1	PC	blind	○○정공(주)	
45	K306132	RESIN,TG,RAIGIPOX 310–A/B,2	350699	unknown	0,003	KG	blind	○○○Gi	
46	G4062601799	RETAIN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주)	
47	F317L605691	ROTOR POLE ANNEALING,T	851190	unknown	2	PC	blind	○○열처리	
48	G4082655149	SCREW,T	731815	unknown	4	PC	blind	○○금속(주)	
49	B1002655151	SCREW,Tightenning for Reg. M	731815	unknown	2	PC	blind	○○금속(주)	
50	C0352656049	SEAL,S	401693	unknown	1	PC	blind	○○화학(주)	
51	K302249	SHOT BALL, D	830890	unknown	4	G	blind	○○상사(주)	
52	K303003	SILICONE,SG7K TG for REG,S	391000	unknown	0	KG	blind	○○○○○ MADER	
53	F3302611317	SLIP RING ASS`Y,F	3926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54	N9102545469	SLIP RING GUIDE ASS`Y,S	392690	unknown	1	PC	blind	○○산업	
55	E2152548991	Slot Cell,T	392690	unknown	730	MM	blind	○○○(주)	
56	B0102655047	SPACER–P, T	848790	unknown	1	PC	blind	○○피엠(주)	
57	F3422655102	SPACER–RING,T	848790	unknown	1	PC	blind	○○피엠(주)	
58	B1052655150	STUD BOLT, T	731815	unknown	1	PC	blind	○○산업(주)	
59	B1052655150	STUD BOLT, T	731815	unknown	2	PC	blind	○○산업(주)	
60	D7302655067	TERMINAL B+,S	731815	KR	1	PC	blind	○○산업(주)	
61	K200085	THERMO SET WIRE,T	854411	unknown	0,361	KG	blind	○○○전선(주)	
62	B7202655049	THROUGH BOLT, T	731815	unknown	4	PC	blind	○○산업(주)	

Answer sheet for Question of CBP

	Question	Answer	Attached sheet
12.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Not applicabl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12.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We were paid a commissions for this transaction to Uriman.	#1. Commissions Invoice (UR121107VMESK)
	(1) packing (2) commissions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4) assists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13.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revisions thereto.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2. P/O and Distribution Agreement.	#2. PO and Distribution Agreement
13.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3~4. Product sheet.	#3. Product sheet (Alternator) #4. Product sheet (Starter)
13.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5. BOM,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1. Additional Data sheet.	#5. BOM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1. Additional Data sheet
13. E (14)	First, pleas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 illustration of each of the parts. How will they be used? For what purpose? What are they made of?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3~4. Product sheet.	#3. Product sheet (Alternator) #4. Product sheet (Starter)
	Nex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	—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e manufacture all products only in Kyongju, Korea.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7~10. Manufacturing Process sheet.	#7. Kyongju Plants (in KOREA) #8. Manufacturing Process sheet A0002655302, A0002613848 #9. Manufacturing Process sheet TA0002608756 , TA000A63701, TA000A48402 #10. Manufacturing Process sheet TM000A28901

	Question	Answer	Attached sheet
	An explanati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HS CODE 8511.40 and 8511.50 specific rule of origin : ▶ A change to subheading 8511.10 through 8511.80 from any other subheading. (CTSH)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r each material.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3. E (14)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We are using SAP for ERP.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11. Additional Data sheet.	#11. Additional Data sheet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1. Inventory management method : Averaging But, we are consider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materials as "Fungible materials" following that: (1) if the materials purchased as fungible materials are all originating, the material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materials, (2) otherwise if any material is non-originating, the all materials purchased are considered as non-originating materials. 2. Indirect materials, etc :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5. BOM	#5. BOM

Concerning your request, we would like to reply as above:
 — The answer that related with the cost is regarded as confidential one in our company.
 In case, if you still need the cost to verify the data, then we can prepare and provide it with only after receiving a nondisclosure agreement.

We would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Name :
 Title : FTA manager (Purchaig Planning Team)
 Date : 2013.04.26

04

검증결과 및 이행통지



- 1. 개요
- 2. 통보내용



1. 개요



수입자/수출자/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미국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CBP Form 29(Notice of Action)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고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수입자에게 검증결과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고 검증을 종료하며,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검증결과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적(Negative) 결정을 내리고 CBP Form 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is Proposed) 또는 최종결정(Has Been Taken)을 그림 3-1 및 3-2와 같이 통보한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은 수입자,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추가적인 현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실시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방문에 앞서 검증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면 질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질문서의 내용은 회사의 수출입에 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여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주요한 항목은 회사의 조직, 운영, 회계, 수입부서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이다.

이후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수입부서의 존재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2. 통보내용



CBP Form 29는 12번란에서 ① 예비결정 인지, ② 최종결정 인지를 통보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최종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 그 결정에 따르고, 정산 후 이의제기를 이용하여 구제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결정이다.

예비 결정문	만약 이 예비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관으로 서면 이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일 이후에는 해당 수입건이 예비결정 내용대로 정산되게 됩니다.
최종 결정문	해당 수입건은 정산과정에 있으며, 해당 세관은 더 이상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결정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산절차로 넘어가 최종 확정되고,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이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1〉 CBP Form 29 – CBP측 결정통지 사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19 CFR 152.2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1. DATE OF THIS NOTICE 11/28/2012
2. CARRIER MARKS WISMA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08/31/2012	5. ENTRY NO. EWW10053160
6. MFR/SELLER/SHIPPER CNJIAHAN1JIA	7. COUNTRY CN	8. CBP BROKER AND FILE NO. Julio Rodriguez US Customs Broker Corp.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CAR TIRES			
10. TO		11. FROM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 IS PROPOSED ▶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 HAS BEEN TAKEN ▶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 RATE ADVANCE B. ☐ VALUE ADVANCE C. ☐ EXCESS ☐ WEIGHT ☐ QUANTITY D. ☒ OTHER (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Based on information submitted the above referenced merchandise comprises Light truck tires therefore are subject to the Chinese Safeguard 25% additional duties and are classifies as follow: Line 002: 9903.40.05/25% 4011.10.1030/4% Line 003: 9903.40.05/25% 4011.10.1040/4% Line 004: 9903.40.05/25% 4011.10.1060/4% Line 005: 9903.40.05/25% 4011.10.1050/4%			
14. CBP OFFICER (PRINT OR TYPE) Laramie Calero		15. TEAM DESIGNATION 453	16. TELEPHONE NO. 787-729-6980

CBP Form 29 (10/12)

〈그림 3-2〉 CBP Form 29 – CBP측 결정통지 사례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Continuation Page
19 CFR 152.2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1. DATE OF THIS NOTICE 11/28/2012
2. CARRIER MARKS WISMA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08/31/2012	5. ENTRY NO. EWW10053160
6. MFR/SELLER/SHIPPER CNJIAHAN1JIA	7. COUNTRY CN	8. CBP BROKER AND FILE NO. Julio Rodriguez US Customs Broker Corp.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CAR TIRES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EWW10053160	2	13-309009100	
EWW10053160	3	13-309009100	
EWW10053160	4	13-309009100	
EWW10053160	5	13-309009100	
14. CBP OFFICER (PRINT OR TYPE) Laramie Calero			
15. TEAM DESIGNATION 453		16. TELEPHONE NO. 787-729-6980	

CBP Form 29 (10/12)

05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 1. 개 요
- 2.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 3. 자료보관 가이드라인



1. 개요



현재까지의 미국세관의 검증사례를 보면 미국세관은 대부분 정보제공 요청단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세관의 특혜관세 배제조치의 대부분은 미국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세관은 제출받은 원산지 증빙자료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상태에서 원산지 검증을 종료하고,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단계인 서면조사 및 현지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의 정보제공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이 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이 종료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특혜관세 거부 요건

미국 세관은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특혜관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세관장에게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가 없는 FTA 원산지 신고를 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장 검증(verification visit)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미국세관(또는 미국의 수입자)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특정 수입건에 대한 검증(Single Transaction Verification)에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향후 전체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증(Total Transaction Verification)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은 더욱 더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 관세청 검증관련 조직

미국 관세청의 FTA 원산지 검증은 '특정 수입신고'(Single Transaction)건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Total Transaction)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증'은 주요 항구에 소재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이 당해 세관에 수입신고된 특정 건에 대하여 검증(Port Authority Verificat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은 CBP 본청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의 기업 심사와 산하의 주요 항구 현장사무소(Field Office)의 심사전문관(Auditor)에 의하여 검증(CBP Audit Verification)이 수행되고 있다.

미국 관세청 검증 유형 및 수행기관

특정 수입신고건 검증	통관지 세관 차원에서 검증 수행
특정 업체 원산지 검증	CBP 차원에서 검증 수행
섬유류 검증	CBP 산하 섬유생산검증팀에서 수행(가장 강력한 검증수행) * 9개국 174개 공장 현장검증(2012년)

2. 수출자 / 생산자의 대응전략



01

먼저 원산지 증빙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라

CBP의 서면조사는 먼저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잘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따라서 CBP가 Form 28로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하므로 먼저 증빙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02

CBP가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라

CBP는 수입자에게 30일 내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수입자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입자와 협의하여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치 못하면 CBP는 수입신고시 적용된 협정 관세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3

영업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직접 미국세관에 검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CBP는 원칙적으로 수입자를 통하여 원산지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수출자/생산자는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직접 미국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04

자료 제출시 수입자와 협의하여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라

CBP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미 FTA협정 등 양 당사국 사이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세관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한글 번역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세관도 한글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는 영문 번역본을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중 어느 하나가 영문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다.

05

충분한 자료제출로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면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CBP는 수입자 등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원산지 검증을 종료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서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로 원산지 상품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06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미국세관의 검증대상 선별은 섬유류 및 자동차 부품류 등 전략적 검증대상 품목과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 건 뿐만 아니라,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평가 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별된다. 또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다양한 공급체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하여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체결국가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관리와 효율적인 검증대응을 위해서는 FTA-Pass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상시부터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자료보관 가이드라인

1. 개요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 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2. 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

●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신청한 수출자는 다음의 자료 중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 신청서류 사본
- ②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07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

한-미 FTA협정뿐만 아니라 모든 FTA협정에서는 직·간접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 협정별로 또는 각 품목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여 수출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수출입 관련 원산지 업무를 전담하거나 관세청 및 세관에서 시행하는 원산지 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관세사 등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요청 대응 가이드라인

- ① 먼저 원산지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라
- ② 수입자의 자료제출 기한(30일)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수입자와 협의하라
- ③ 필요한 경우 수입자를 통하여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④ 영업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직접 미국세관에 검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 ⑤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조사(원산지 검증)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⑥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⑦ 원산지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

- ④ 당해 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⑤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⑥ 당해 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⑦ 당해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⑧ 당해 물품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⑨ 당해 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확인서류
- ⑩ 당해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행한 증거(회계 또는 내부 장부 포함)
- ⑪ 당해 물품의 운송서류
- ⑫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에 한함)
- ⑬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 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 －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 생산자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발급한 생산자는 다음의 자료 중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 확인서, 수출물품 국내제조확인서 등)
- ②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
- ③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④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⑤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공정 증빙자료
- ⑥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⑦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⑧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기재 필수)
- ⑨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⑩ 재료 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
- ⑪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⑫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⑬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⑭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⑮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 ⑯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 －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3. 원산지기준별 필수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발급·신청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협정관세대우를 신청한 수입자는 당사자별 증빙자료와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산지검증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전생산기준

- ①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세번변경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역내가치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⑦ 당해 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 가공공정기준

- ① 당해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

● 역내가공원칙

- ① 당해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가공 계약서 등)

●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 ① 당해 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공정 증빙자료

● 누적기준

- ①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 최소허용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명세서

● 중간재 기준

- ① 자가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②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기재 필수)
- ③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④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⑤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 증빙자료

● 대체가능물품

- ① 대체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 등으로 구분·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자료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종·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② 대체가능물품의 관리에 적용된 재고관리기법 및 동 기법에 따른 계산 근거 자료

● 세트물품

- ① 당해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자료
- ② 당해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③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 요소 및 요소별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④ 당해 세트물품 및 구성요소별 가격 증빙자료
- ⑤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별 원산지 증빙자료

● 간접재료(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물품에 사용된 간접재료 목록 및 간접재료의 용도·기능·성분 설명서 등 포함)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기재 필수)

● 부속품·예비부품·공구(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②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가격 증빙자료
- ③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원산지 증빙자료

● 소매용 포장·용기(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②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가격 증빙자료
- ③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증빙자료

● 직접운송원칙

- ①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된 경우 상품의 모든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② 양 당사국이 아닌 제3국(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한-미 FTA·한-칠레 FTA 제외)
 -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한-미 FTA·한-칠레 FTA 제외)
 -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당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될 것)
 - 비당사국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비당사국에서 발행하는 하역 관련 서류(당해 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표시 등)

4. 자료보관 방법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 하되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

- 가.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날짜순으로 보관
- 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보관

● 보관매체 및 검색 조건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가. (종이 서류)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 나. (이미지 전산파일)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 다. (전자서식)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 라. (가, 나, 다 혼합 보관) 가·나·다를 혼합·연계하여 보관

원산지 관련 용어

● 약어표

WO	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CC	Change of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세번변경기준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SP	Specific Processes	특정공정
LC	Local Contents	역내재료
MC	iMport Contents	수입재료
BU method	Build Up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집적법
BD method	Build Down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
NC method	Net Cost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순원가법
AV	Adjusted Value	조정가치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비원산지재료가치
VOM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원산지재료가치
PSR	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 원산지 기준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주요 용어

Origin Criteria	원산지기준
Intermediate Material	중간재
Accumulation	누적계산
De Minimis	최소허용기준
Fungible Materials	대체가능재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Indirect Materials / Neutral Elements	간접재료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Non-Qualifying Operations	불인정공정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
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검증
Advanced Rulings on Determinations of Origin	원산지 사전판정
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
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
Claims for Preferential Treatment	특혜관세 신청
Unit of Qualification	원산지 자격 단위 물품
Approved Exporter	인증수출자
Supporting Documents	증빙서류
Discrepancies and Formal Errors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FTA 정보제공 웹사이트

◉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기관명	인터넷 사이트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한국관세사회 FTA 포탈	http://fta.kcba.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산업통상자원부FTA	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curiss/fta/vision_re/list.aspx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certweb/
무역협회	http://okfta.kita.net

◉ 해외시장정보, 산업동향정보 제공

기관명	인터넷 사이트
글로벌 윈도우(코트라)	http://www.globalwindow.org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fta.go.kr
중소기업청 원자재정보시스템	http://www.wji.go.kr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http://www.ois.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미국 FTA 정보제공 사이트

주 소	정 보
http://cbp.gov	미국 관세청
http://dataweb.usitc.gov	미국 세율 조회
http://www.ustr.gov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otexa.ita.doc.gov	미국 섬유수출통계국
http://web.ita.doc.gov	한-미 FTA Commercial Availability(Short Supply)

◉ 전 세계 FTA 현황 참고 : <http://www.bilaterals.org>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



발 행 일	2013년 12월
발 행 인	정재열
발 행 처	서울본부세관
제 작	서울세관 FTA 집행국장 김윤식 서울세관 FTA1과장 박희규 서울세관 FTA1과 채경식 윤성진 윤성현 김규선 김현이
영문번역	서울세관 FTA1과 김경하
감 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동수 김은영 김남국
인 쇄	아미고디자인(02-517-5043)
문 의	서울세관(02-510-1561)